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8권 제2호 (2020. 7)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이영우*, 장수연O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O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e-mail: lawking77@kwu.ac.kr*, mikey86@naver.comO

A Study on the Current Public Interest Reporte Protection System

Young-Woo Lee*, Su-Yeon JangO
*Department of Police & Law, Kwangju Women`s University,
ODepartment of Police & Law, Kwangju Women`s University

● 요 약 ●

현행 우리나라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하여 2011년 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익침해행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신고로 인하여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신고로 인하여 공익신고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공익신고자(Public Interest Reporter), 공익신고(Public Interest Report), 공익신고자 보호법(Public Interest Reperter Protection Act), 보호조치(Protection Measures), 수혜조치(Benefit Measures)

I. Introduction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은밀하고 지능화되어 감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 특히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렵고, 이를 적발하거나 시정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로 인하여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해고와 징계뿐만 아니라 근무처 변경, 승진 탈락, 집중적 감사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받는 등 문제점이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공익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에 대한 미흡한 보호와 지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개선할 점을 제시하고자한다.

II. Main Protection Measures

1. Confidentiality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과정 등에 협조한 사람의 비밀도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1].

2. Personal protection

공익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할 수 있고,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 또한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신고자법 제7조에 따라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를 할 수 있다[2].

3. Reduced liability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를 함에 있어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형이나 징계를 감경,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3].

III. Main Benefit Measures

1. Compensation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에서는 내부공익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① 벌칙·통고처분 ② 몰수·추징금의 부과 ③ 과태료·이행강제금의 부과 ④ 과징금 부과 ⑤ 국세·지방세의 부과 ⑥ 부담금·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⑦ 손해배상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을 통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발생하거나 그에 관하여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보상대상가액의 4~20% 지급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30억 원이다.

2. Bounty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라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①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②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 처분이 있는 경우 ③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④ 과태료,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⑤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Relief money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에서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①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②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③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④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⑤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다만, 인 · 허가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제외)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IV. Improvements of Protection System

1. Securing effectiveness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제23조에서는 불이익조치 추정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이라는 추정기간에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어 공익신고자가 신고 후 불이익조치를 2년 이상 지난 후에 받으면 불이익조치로 추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불이익조치에 대한 추정기간의 시간적인 제한을 없애는 규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다[4].

2. Introduction of the necessary reduction system

개정 전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의 대상인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이나 징계에 대하여 임의적 감면을 규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형의 임의적 감면 뿐만 아니라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확대하였다. 하지만 법적 책임의 문제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적 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이 옳을 것 같다[5].

3. Support Plan for Public Interest Reporters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로 2019년 12월까지 8년 동안 구조금 지급 건수는 총 17건이며, 지급 금액은 총 25,979,89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고자들이 공익신고 접수 시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알려주어야 하며, 이러한 구조금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6].

V. Conclusion

지금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내용을 살펴보았듯이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익신고자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유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조치와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등 수혜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익신고자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방안 등 대책이 필요하다.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갈 수 있게 할 것이다.

REFERENCES

[1] Gyung-Seok Kim, "A Study on the whistle-blowing system as the response to corporation's corruption ", 「Seoul Law」 Vol. 26, No. 3,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p.463, 2018.

[2]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Manual for handling public interest reports and protecting reporters"*, p.72-73, 2016.

[3] Beom-seok Lee, "A Study on Improvement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System-Focused on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 Dongguk University Ph.D. thesis, p.26, 2018.

[4] Soo-Jin Kwon, Sung-Hyun Yoon, "A Study on Improv ement of Whistleblowing System for Public Interest",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series of research」,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205-206, 2016.

[5] Jae-Hak Lee,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r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Act for the Activation of the 'Public Interest Reporter(or Whistleblower)' System", 「Study of Law」 Vol. 25, No. 1,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p.230, 2017.

[6]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ti-Corr 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hite Paper*", p.196, 2019.